

- 2017년 6월 [제43차]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목 차

1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	.....	2
---	--------------------------	-------	---

#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5년 11월 18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업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바. 폭력, 가혹행위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아. 기타 품위손상						○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		
	나.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다.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행위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구 분	징 계 사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문서 및 관인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다. 관리 소홀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나. 예정가격 누설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4.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작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	○	○	○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발생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 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	○	○	○	
6. 소송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	
7. 세무행정	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3. 세무실사 위법·부당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나. 세율계산 조작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7. 압류 부당 해제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9. 결손처분 부당처리					○	○	
8. 보건환경	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 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부당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나. 향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다. 향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0	0	0	
12. 교통행정	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0	0	0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10. 자동차 검사·등록 부적정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					○		
13. 청소관리	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 2. 봉사료 강요 3.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소홀 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5.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		○				○	

※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